

古文書를 통해본 高靈 商務社와 그 관련 儀禮

오 용 원*

차례

- I. 머리말
- II. 高靈 商務社의 形成 및 資料 檢討
- III. 高靈 商務社의 儀禮와 傳承
- IV. 結論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령 상무사와 관련있는 성책 형식 고문서를 통하여 고령 상무사의 형성과 의례, 민속 등을 살펴보았다. 상무사 관련 고문서는 총 18종이 현존하고 있는데, 수록된 형식별로 분류하여 상무사 구성원과 형성 과정, 結契와 그 운영, 그리고 소략하게나마 관련 의례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령 상무사의 구성원 및 조직의 의례는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무사의 반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祭禮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상무사의 제례는 일반적인 그것과는 상이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상무사의 제례는 제사가 끝난 뒤 時在接長으로 차장된 사람에게 公文과 기물을 올리는 의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宴會가 뒤따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령 우사계에 전하는 의례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제사는 원래 두 차례의 정기 대제(음력 3월 16일과 10월 25일)와 세 차례의 시제(정월 회일, 7월 15(백중), 8월 30일)를 모셨다. 그러나 현재 우사계의 제사는 봄·가을 두 차례 정기 대제만 행해진다. 이 대제들은 고인이 된 반수와 접장을 모시는 제사이며 매년 접장 집에서 거행된다. 우사계의 제사절차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아직까지 접장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우사계 제사는 반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HK교수

수와 접장의 신위를 함께 봉안하여 제사를 모시는 점이 특이하다.

주제어

상무사, 좌사계, 우사계, 반수, 접장, 고문서, 선정비

I. 머리말

흔히 ‘장돌뱅이’로 불리는 裨負商은 조선후기 陸路 행상의 중심이자,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계층 간·지역 간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지하듯이, 보부상은 주로 장신구나 귀금속 등 값비싼 물품을 취급하는 裨負商과 토기·생선·소금 등 생필품을 취급하는 負商으로 나눌 수 있다. 보상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황아장수’란 말이 더 친숙했으며,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보자기에 싸서 멜빵에 메고 다녔다. 이들이 지고 다니던 방물고리에는 주로 땡기·비녀·얼레빗·족집게·연분함·분통 등 작고 값이 비싼 사치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부상은 ‘돌짐장수·등금장사’ 등 지역마다 호칭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운반 수단으로 주로 지게를 사용했다. 이들은 토기를 비롯한 생필품 5종을 주로 취급하다가, 후기에 와서 竹物·청마·糖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보부상과 관련된 연구는, 첫째 보부상의 기원 및 기능·역할 등을 고찰한 것,¹⁾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보부상의 사회·정치적 역

1) 신학문의 입장에서 보부상에 대한 연구는 李能和, 『朝鮮의 負裨商とその變遷』, 『朝鮮』 271호, 昭和 12년 12월(1937년)이 최초이며, 이후 車相瓚의 『朝鮮의 裨負商』, 『朝光』 4-9, 1938 및 柳子厚 『朝鮮負裨商攷』, 1948(정음사) 등이 나왔다. 보부상의 기원과 기능 등에 관해서는 선행 세 연구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다루고 있으며, 근래에 나온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2001(혜안)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두루 수용하여 보부상이 근세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할, 2) 셋째 각 지역별 보부상 관련 자료 검토, 3) 넷째 보부상 관련 놀이와 유흥 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풍속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보부상에 대한 지역별 연구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高靈 商務社에 대한 연구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130년을 이어 온 우리 상인 단체 고령 상무사』⁵⁾는 고령 상무사의 형성에서 민속까지를 두루 고찰한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상무사는 구성원들의 신분적 제약과 정치 참여, 신문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몰락 등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있어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게다가 현전하는 자료가 극히 드물다는 점 또한 이 같은 難點을 배가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商務社章程』·『班首先生案』·『班首接長名單』 등 고령 상무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상무사의 기원과 고령 상무사의 형성, 고령 상무사의 의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 상무사의 변천과 20세기 사회사적 기능, 지역적 특징 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 2) 보부상의 사회·정치적 기능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 및 비판적 시각의 접근은 엄묘섭, 「조선후기보부상집단의 사회적 기능」,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87 및 조영준,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대한 재평가-元洪州六郡商務友社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7호, 한국경제사학회, 2009 등에 자세하다.
 - 3) 각 지역별 보부상 관련 자료 검토는 최진욱, 「韓末 襍負商의 變遷」, 『정신문화연구』 통권 29호, 1986 및 조재곤 「보부상 문서의 운영 체계와 활용 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23집(겨울호), 2002에 자세하다.
 - 4) 보부상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은 이창식, 「보부상 민요의 현장론적 접근」,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및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2001(말알) 등에 자세하다.
 - 5) 임경희 지음, 『130년을 이어 온 우리 상인단체 고령상무사』, 고령군(중문출판사), 2002. 본문에서 다룰 '고령상무사의 형성'에 대해선 이 책 및 임경희, 『조선부보상과 고령상무사』, 고령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高靈 商務社의 形成 및 資料 檢討

1. 상무사의 기원과 고려 상무사의 형성

조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으며, 신분 계층을 士·農·工·商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상업을 천시했다. 따라서 보부상 또한 사회의 최하층민들이 담당하였으며,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기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보부상의 기원에 대해선 조선 건국 초기로 올라가 李成桂와 황해도 출신 상인 白達元의 친분 관계, 고려 유민들이 새 왕조를 거부하고 상인이 되었다는 설 등 다양하지만, 正史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길은 없다.

보부상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상업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 이후의 일이다. 조선 사회는 17세기 후반부터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적 분업의 진전으로 인해 물물교환 형태에서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의 태동을 마련하고 있었다. 화폐의 유통이 촉진되고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場市와 浦口가 성장하고 상업과 가내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상인 계층의 활동은 전대에 비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行商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보부상들은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업적 이익은 물론 일상적인 행위까지 결속을 다지게 되었다.⁶⁾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와 보부상 집단의 조직이 강화된 것은 경제적 원인도 있지만, 정치·사회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부상들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規約을 만들어 엄격히 준수하였는데, 규약에서 으뜸으로 여기던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이들은 불우한 환경과 신분적 제약 등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공동체를 유지하였는데,

6) 김대길, 「조선후기 시장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3.

이러한 조직의 결속은 국가에 환란이 있을 경우 ‘義憤’으로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1866년 丙寅洋擾가 발발했을 당시 고종은 강화도 정족산성 전투에서 보부상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頭領들을 遞加한 일 등에서 보부상들의 忠義와 報國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보부상 조직의 체계적 정비는 187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 조선은 그야말로 外憂內患을 겪고 있었다. 밖으로는 개항과 함께 외국상품과 외국상인들이 밀려 들어와 국내 상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라 안에서는 곳곳마다 약탈을 일삼는 도적들이 들끓고,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들까지 行商에 가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면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士農工商의 신분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97년 이른바 〈漢城府完文〉을 반포하고 보부상들에게 신분증에 해당하는 ‘驗標’를 발급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보부상의 정비는 늘어가는 행상을 막는 것 외에도 군사력의 보강과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개항 이후 밀려드는 서구 열강 앞에 보부상단의 조직과 상업력은 그야말로 안성마춤의 대안이었다. 이에 고종은 1822년 判書 趙寧夏(1845~1884)에게 명하여 팔도의 負商들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1899년에는 보부상단의 명칭을 상무사로 개칭하고 종로의 육의전까지 상무사에 복속시켰다. 그 결과 상무사는 京城에 本社를 두고 지방에 支社를 두는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부상단은 ‘左社’로 보상단은 ‘右社’로 불리게 되었다.

高靈에 商務社 左社稷가 설립된 것은 1866년(고종3년) 丙寅洋擾 때였으며, 우사계는 그보다 약 30년 뒤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고령 상무사의 규모 및 소속 인원 등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으며, 시기별 任員을 통해 개략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설립 초기 고령 상무사 左社 任房은 班首-接長 10명 내외의 公員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고령 상무사 좌사 임방은 단일 임방



〈그림 1〉『接長先生案』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규모와 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 반수와 접장을 포함한 공원의 수가 많을 때에도 12~5명을 넘지 않았으며, 적을 때에는 2~5명에 불과했다. 또 고령 상무사 좌사는 지역 출신 몇몇 가문에서 임방의 반수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는데, 이는 좌사와 관청의 유기적 연결고리 때문이다. 좌사의 반수는 대부분 관청의胥吏 출신인 점이 이를 잘 대변한다. 고령 좌사계의 반수는 1866~67년 兪鎭教, 1868~73년 朴昌惠를 필

두로 1910년까지 兪氏家와 朴氏家에서 번갈아 맡고 있다. 이후 좌사계가 商業보다는 친목을 다지는 단체로 성격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느슨해졌지만, 당시에는 엄격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 우사계는 좌사계보다 30년 늦게 결성되었는데, 1899년 상무사가 발족되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단만 있는 곳에는 부상단을 보충한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좌사계와는 달리 남아 있는 전적이 부족하여 실제 및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다만, 고령 우사계는 좌사계와 달리 반수와 접장을 지역 출신 유지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 상무사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고령 상무사 관련 자료 검토

현진하는 고령 상무사와 관련한 자료는 서론에서 언급한 『商務社章程』·『班首先生案』·『班首接長名單』 외에도 『先生案』·『接長先生案』·『故先生神位案』·『稷案』·『界圓名簿』·『左社契規約』·『高靈郡左社節目』·『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目』·『左支契規約及稷圓名簿』·『祝文式』·『高靈郡友社商稷』·『靈郡友社商稷定款』·『高靈郡友社商稷財産目錄』·『商務章程附則』·『東亞改進教育會商業課章程』 등 18종 정도가 있다. 수록된 형식별로 이를 분류해 보면, 『商務社章程』 류의 규정집, 『先生案』 류의 인원 명단, 『高靈郡左社節目』 류의節目, 『祭祝文式』의 생활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고령 상무사 관련 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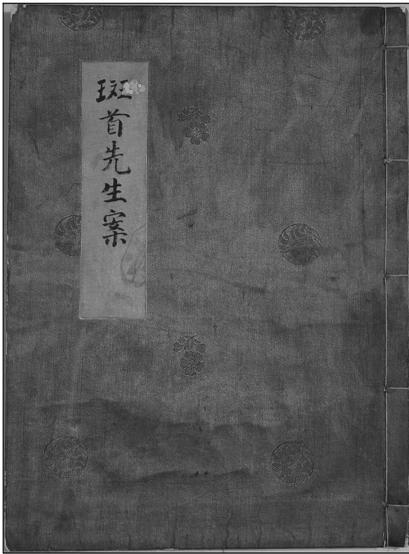
1) 인원 명단

고령 상무사의 구성원 및 班首·接長 등을 기록한 명부는 『선생안』을 비롯하여 『班首先生案』·『班首接長名單』·『接長先生案』·『左社稷規約及稷員名簿』·『稷案』·『稷員名簿』 등 총 7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좌사와 우사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선생안』·『반수선생안』·『接長先生案』·『좌지계규약급계원명부』·『계안』 등 5종은 좌사의, 『반수접장명단』·『계원명부』 등 2종은 우사의 인적 구성을 수록한 책이다.

좌사계 인원 구성 관련 기록 중 『선생안』은 『班首先生案』이라고도 하며, 상무사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班首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고령 지역에는 『선생안』과 『班首先生案』이 모두 전하고 있다. 두 책의 차이점은 『반수선생안』이 반수들의 성명만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해, 『선생안』은 반수를 비롯하여 접장·부반수·公員·執事 등의 성명까지 기록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先生案』이란 용어는 表題를 따른 것인데, 김재동의 서문에 ‘左社商務會稷案序’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고령 좌사계의 반수 명단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인원은 반수만 하더라도 白楚山으로부터 海杓에 이르기까지 총 116인이다. 『반수선생안』은 白楚山부터 朴桂年에 이르기까지 58인은 성명만 기록하고, 박계년 이후 金尙權에서~金昌文까지 36인은 반수를 역임한 해의 간지를, 金龍錫~諸準植까지 11인은 반수 역임 간지 및 本貫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반수선생안』에 수록된 인물은 총 105인임을 알 수 있다.⁷⁾



〈그림 2〉 『班首先生案』

『선생안』 외에도 좌사계의 인원 구성과 관련된 자료는 『계안』과 『접장선생안』이 검토할 만하다. 『접장선생안』은 접장 賓隅日부터 魯章錫까지 55명은 성명만, 金海龍에서 郭且孝까지 36명까지는 성명과 접장 역임 연대를, 諸準植에서 郭洪一까지 9명은 본관과 역임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班首를 역임한 이는 성명 아래에 그 사실을 기록했다. 『계안』은 『접장선생안』보다 수록 내용이 많고, 반수와 접장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기록 방법은 姓名一字

號一本貫一原籍一住所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좌사계의 반수와 접장에 대한 인원 정보는 『선생안』과 『계안』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7) 『반수선생안』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漆原人 崔준식 조 아래의 작은 글씨 ‘西紀二千四年’로 보아, 이 책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사계의 인원 정보는 『반수집장명단』과 『계원명부』에 상세하며, 전자보다 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반수집장명단』은 서명처럼 반수와 집장을 구분하였는데, 반수는 朴根得부터 白璇鉉까지 90명, 집장은 徐文賢부터 田正萬까지 69명의 姓名一字-거주지를 기록하였다. 『계원명부』는 姜基洛에서 朴基星에 이르기까지 우사계원 559명의 姓名一字-본관-주소를 기록하여, 현전하는 인명부 가운데 수록 내용이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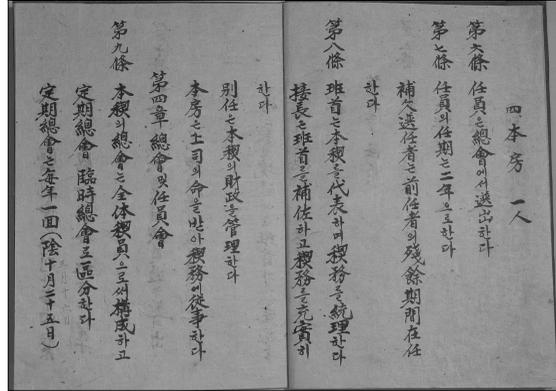
2) 規定 및 規約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모임 등에서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단체 활동에 원칙과 사명을 부여하고자 다같이 준수해야 할 法則 등을 제정한다. 1899년 보부상이 상무사로 개칭되고 난 뒤 곧바로 『상무사장정』이 간행되었는데, 내용은 크게 序·勅令案·人員任命記事·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갑오경장 이후 위축된 상업 활동을 권장하고, 商路를 확장하기 위하여 各 塵과 負·襍商을 합하여 상무사를 만들었다는 설립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 칙령안은 16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의 위치·조직·간부 구성·자본금·회원의 자격·細則 등을 기술하고 있다. 장정은 20개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상무사의 위치·사원 월급·구관사장과 사무장의 권한을 비롯하여 개항장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商務學校 설치·商民의 私設 都會 邑金·無名 雜稅 革罷 등에 관한 것이 실려 있다.

『상무사장정』 외에도 고령 상무사의 규정을 기록한 책으로는 『상무장정부칙』·『좌사계규약』·『동아개진교육회상무업무장정』·『정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관』은 우사계의 규정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3종은 좌사계의 규약 및 규정을 기록하였다. 고령군 좌사계의 규정은 일반 상무사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가운데 『정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고령 상무사 우사계의 특징을 잠시 엿보도록 한다.



〈그림 3〉『定款』



〈그림 4〉고령군우사상계 定款 내용

第一章 總則：第二條 本榷은 右社本來의 使命과 機能은 終熄되었으나 그 傳統의 情神과 遺風을 繼承하여 榷員相互間의 相扶相助와 親睦을 敦篤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五章 會計：第十四條 本榷의 歲出은 다음 項目 以外에는 支出하지 못한다. 一. 祭享費 二. 總會 및 任員會會議費事務費 三. 慶吊費 第十六條 本榷의 財産을 管理하는 別任은 管理財産에 對한 保證書(保證人二人)를 每期初班首에게 提出한다. 第十七條 別任은 本榷의 財産明細書를 每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인용문은 고령군 우사계의 『정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제1장 총칙을 통해서 우사계는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잃었지만, 전통정신과 유풍을 계승하여 친목을 돈독히 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관이 작성된 때가 임자년(1912년)이므로 1910년이 지나 상무사는 상업적 기능을 완전히 소실하고, 친목계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우사계의 임원은 반수와 접장을 비롯하여 別房 1인·本房 1인 등이 있다. 이 역시 다른 지역의 계원 구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會計 조에서 祭享費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향비란 상무사의 초대 반수 백달원을 포함한 역대 반수들의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상무사의 규정 및 규약을 기록한 전적에서 상무사의 의례 및 민속을 고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장을 달리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기타

고령 상무사 관련 자료 가운데는 상무사 소유의 토지를 기록한 『재산목록』과 歲儀 및 각종 儀禮에 필요 물품을 기록한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이 주목할 만하다.

『재산목록』은 표지 좌측 하단에 ‘高靈郡友社商稷’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우사 소유의 토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甲寅·甲子 연간에 吉禮·凶禮를 비롯하여 각종 제례에 필요한 제수와 부조한 물품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고선생신위안』을 부기하여 제례 시 진설하는 神位까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고령 상무사와 관련된 의례와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선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高靈 商務社의 儀禮와 傳承

1. 고령 상무사의 儀禮

1) 總會〔公事〕

상무사 조직은 여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과 의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사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이른바 ‘公事’라고 부르는 총

회가 있다. 이 총회는 연중행사의 형식으로 장엄하게 거행된다. 공사일은 각 상무사의 本所에서 대체로 음력 3월 10일경부터 4월초 사이의 적당한 날을 책정했다. 공사에 참여하는 보부상은 목화송이를 달아맨 패랭이를 쓰고⁸⁾ 용을 그린 물미장을 짚고 긴 저고리와 통바지를 입었다.

대체로 공사의 장소는 집장을 비롯한 기타 두령들이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례에 의하면 新在接長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장터, 빈터, 빈 밭 등 넓은 장소를 이용하였다. 공사총회 장소가 집장의 주소 근처로 정하는 이유는 공사의 宴會 준비의 편의성 때문이다. 총회에서는 집장이 교체되는 데 총회연은 구 집장이 준비를 전담하고 음식 일체를 집장의 집에서 마련하여 총회장소로 운반한다. 보부상들이 해마다 모이는 각처의 총회에서 거행되는 행렬 중에는 집사자리는 임원이 슴 송이가 달린 패랭이를 쓰고 공문궐을 메고 나타난다. 총회식장에는 술문을 만들어 세우고 “○○商務社總會”라고 쓴 현판을 달고 명석을 널찍이 깔아 놓는다. 그리고 각 상무사의 社旗에 해당하는 奉枚旗를 비롯하여 각 임소에서 행렬하여 가지고 온 수 십개의 청사초롱을 식장 입구에 세우고 그 밖의 온갖 장식을 화려하게 하였다.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임원선거이다. 보부상들은 자신들의 商權을 보호하고, 國益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한 민간 기구이므로 임원선출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출하였다. 당시에는 상당히 과격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임원을 선출했던 것이다. 『상무사장정』·『정관』 등을 통해 고령 상무사 좌·우사의 선거 및 피선거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第三條 本社에 幹務人員은 左와 如ᄇᄂᆞᆫ事. 社長 一員, 勾管社長 一員, 副社長 一員, 司務長 一員, 副司務 三員. 第四條 社長以下諸員이 訂期ᄇᄂᆞᆫ야 本社에 會集ᄇᄂᆞᆫ

8) 목화송이를 맨 패랭이는 보부상의 고유한 복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유교성, 「이조말기 보부상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1958 참고.

야 商務의 慣熟하고 商業에 願赴하는 者를 社長니 認可해야 社員으로 定히되 隨其 材品야 公事員掌務員明查員財務員을 分任 糶事. 第五條 社長以下와 諸社員이 各 出分等股金야 商務의 資本을 습을事. 第六條 本社에 會議事務權限은 左와 如糶 事 一. 商業의 旺盛하는 方法과 衰退함을 救하는 方案을 議決 糶事 一. 商務에 利害得失에 關호 意見을 政府와 農商工部에 具申 糶事 一. 商業에 關호 事件을 政府와 農商工部諮問에 答申 糶事. 第七條 本社會議時에 雖非社員이나 學術技藝或商業에 經驗이 有호 者는 特別會員으로 臨時議席에 請入해야 叅列케 함을 得糶事[이 상은 『상무사장정』]

第三章任員 第五條 本稷에 다음 任員을 둔다. 一.班首 一人 二.接長 一人 三. 別任 一人 四.本房 一人 第六條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七條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補久先任者는 前任者의 殘餘期間在任한다. 第八條 班首는 本稷를 代表하며 稷務를 統理한다. 接長은 班首를 補佐하고 稷務를 充實히 한다. 別任은 本稷의 財政을 管理한다. 本房은 上司의 命을 받아 稷務에 從事한다. 第四章 總會 및 任員會 第九條 本稷의 總會는 全体稷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定期總會는 每年一面(陰十月二十五日) 定日에 臨時總會는 特別한 事由로 緊急하다고 認定할 時 各各班首가 召集한다. 第十條 總會의 議決은 在籍稷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稷員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班首가 決定權을 가진다. 第十二條 任員會는 必要時班首가 召集하여 稷務를 處理한다.[이 상은 『정관』]

인용문을 통해서 고령 상무사를 비롯한 각 도의 상무사는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 또한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또 총회의 소집 권한 및 시기 등도 규정해 두고 있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총회인 공사에서 선거하기 위한 투표를 ‘圈點’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점은 책의 주석에서 특정 구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나, 행간의 내용이 바뀔 때 사용된다. 그러나 보부상 총회에서의 권점은 자신들만의 선

거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정 구 절도회청 주변에는 잡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곧이어 상임들만 취회하여 권 점의 절차를 구수회의한 후 다음, 도집사가 나와서 공사를 주관한다. 圈紙가 나뉘어져, 圈點이 진행되고 난 후 도집사에게 되돌아 온 권지들이 반수에게 전달한다. 입후보자의 명단이 돌려지면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성 명 아래에 점을 찍음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한다. 권점제도는 본래 나라에서 관원을 임명할 때 자기가 뽑고자 하는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둥근 점을 찍던 방법인데 이것을 상무사가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무사에서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무기명 투표나 기명투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접장 이하의 선생안(상임) 중 에서 한 사람, 요원과 비방에서 각각 한 사람씩 차출되어 권지를 가름한다. 권지를 든 반수가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접장과 반수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領位가 임명하고 差定狀을 발급한다. 이 날은 접장을 비롯하여 반수와 기타 모든 임원이 전부 교체되어 상무사의 행정이 쇄신되는 날이다.

고령 상무사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된 반수와 접장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좌사계의 경우이다.

년도	반수	접장	비고
1866	俞鎭教	賓隅日	
1867	俞鎭教	崔弼禧	
1868	朴昌憲	崔弼禧	전 오위장
1869	朴昌憲	韓 成	
1870	朴昌憲	韓 成	
1871	朴昌憲	韓兢成	
1872	朴昌憲	韓兢成	
1873	朴昌憲	池化成	
1874	俞弘淳	朴昌祚	
1875	俞弘淳	朴昌祚	

년도	반수	접장	비고
1876	俞弘淳	朴昌祚	
1877	俞弘淳	朴鳳鶴	
1878	俞弘淳	朴鳳鶴	
1879	俞弘淳	朴鳳鶴	
1880	俞弘淳	白海宗	
1881	俞弘淳		
1882	俞弘淳	文周瓊	
1883	俞弘淳	文周瓊	
1884	俞鳳濬	玉悌龍	전 오위장겸좌우도도집장
1885	俞鳳濬	玉悌龍	
1886	朴昌祚	鄭昌植	
1887	朴昌祚		
1888	朴昌憲	玉悌龍	
1889			
1890	鄭昌軾	姜萬用	
1891	朴昌)	玉悌龍	
1892-1893			
1894	朴鳳煥	徐達根	전 오위장
1895-1900			
1901	俞元淳	徐達根	
1902	李斗堉	俞東濬	전 통정
1903	李斗堉	徐龍伯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 상무사좌사계는 계가 결성된 1866년부터 일제에 의해 상단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1904년까지 반수직을 특정 가문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좌사계는 1890년과 1902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유씨와 박씨가 반수직을 도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안』이나 『계원명부』 등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좌사계의 실무자라 할 수 있는 公員이나 執事 등의 직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반수 자리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반수직을 세습하는 경향도 보였는데, 이런 특징들은 다른 지역의 상무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2) 祭禮

조선은 儒敎를 국시로 하는 국가였기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조선인들의 삶은 유교적 儀禮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冠婚喪祭의 의례를 준수해야 했으며, 국가의 의례는 여기에 軍禮를 더하여 五禮로 규정되었다. 鮮初에 정비된 『國朝五禮儀』는 조선 사회가 얼마나 의례를 중시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조선조에서 유교식 제례가 정착된 것은 16세를 넘어서였다. 조선 사회는 16세기에 들어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봉사대수가 정해지고 제사의 절차 등이 갖추어짐에 따라 점차 제례의 형식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生諱日祭·輪回奉祀 등 불교식 제례의 영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⁹⁾

고령 상무사 역시 구성원 및 조직의 의례는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상무사 반수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祭禮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상무사의 제례는 일반적인 그것과는 상이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상무사의 제례는 제사가 끝난 뒤 時在接長으로 차정된 사람에게 公文과 기물을 올리는 의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宴會가 뒤따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상무회의 공식적인 의례 행사에는 公文祭 축제도 빼 놓을 수 없다. 공문제는 舊接長이 1년 동안 모시고 있던 공문과 기물을 시재접장으로 차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사이다.¹⁰⁾ 공문제는 마련된 제상에 公文櫃·印櫃·長尺·勿尾杖·器物 등을 올린다. 領位가 초헌관이 되고, 班首가 아헌관이며, 접장이 종헌관이다. 제사가 끝나면 都會廳으로 나가서 시재접장에게 公物을

9)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冠婚喪祭」,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참고.

10) 공문제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선 임경희, 『조선부보상과 고령 상무사』, 고령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을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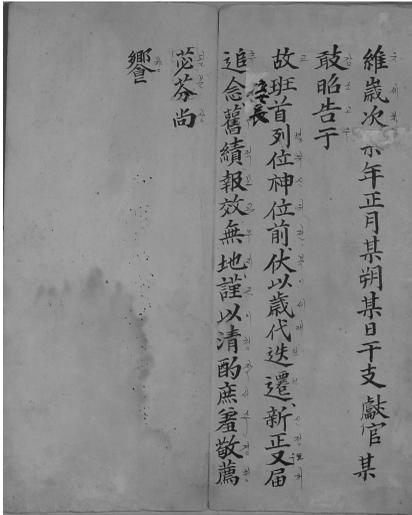
인도한다.

이후 새로 선출된 집장은 전체 社員을 상대로 대규모의 연회를 베푼다. 장을 처음 열 때도 공문제 축제와 같은 형식의 놀이를 담은 '난장'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따라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향연을 위한 집회가 시작되면 선두에는 청사초롱이 서고 그 다음에 악공들이 줄을 선다. 그 뒤로는 집사자가 공문제를 흰 보자기에 싸서 멜빵으로 짊어지고 따라간다. 좌사에서는 도집사가 패랭이 양쪽에 솜방망이를 달았다. 이어서 집장이 뒤를 따른다. 집장은 공문을 가지고 가마를 타며, 두령들은 말을 탄다. 집장의 뒤에는 반수의 공문제를 맨 집사와 時班首가 따른다. 그 뒤에는 영위의 인케 보따리를 맨 집사와 時領位가 따른다. 그 뒤로는 부영위, 전감영위, 전감반수가 각각 서열에 따라 이어진다. 이어서 각 처소의 집장, 부반수, 집사, 본방 명사장, 재무원, 서기, 공원, 경비원 등이 따르고 맨 뒤에는 청사초롱 둘이 좌우에 서서 따른다. 그 뒤로는 일반사원과 관객이 줄을 이었다.

고령 상무사 좌사계에서도 의례로 총회를 마치고 대제를 지낸다. 좌사계는 매년 음력 정월 20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제사를 모셔왔다. 이 날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보부상들이 처소별로 任房旗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면서 축제 장소로 몰려들었다. 최근에 제작한 상무사 기는 이때 등롱과 함께 들고 다니던 것이다. 총회와 제사는 집장 집에서 거행되며 좌사계원들은 이날 故人이 된 반수·집장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이를 大祭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타 지역 부보상단의 公文祭 의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班首神位 奉安 → 初獻官 焚香 및 降神 → 參神 → 初獻 → 亞獻 → 終獻
→ 獻爵 → 계반 插匙 → 侑食 → 闔門 → 開門 → 반수 신위 떼어내기

- 接長神位 봉안 → 초헌관 분향 및 강신 → 초헌 → 讀祝 → 아헌 → 종헌
 → 헌작 → 계반삼시 → 유식 → 합문 → 개문 → 撤匙 覆飯 → 辭神 →
 撤床 → 飲福



〈그림 5〉 고령상무사 『祭祝文式』

인용문과 『한국예절문장』¹¹⁾에 수록된 제례의 절차를 비교해 보면, 고령 상무사좌사계의 제례는 반수의 신위 봉안이라는 특수한 절차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가례』에서 일반 상민들의 선대 봉사를 4대로 한정된 뒤, 민가에서는 사대봉사가 제례의 일반적 기준이었다. 하지만 고령 상무사의 제례는 역대 반수를 역임한 사람들의 신위를 모셨다가 대제마다 봉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신위의 수도 늘어

나며, 진설하는 그릇이나 爵·匙箸 등도 이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讀祝에서 낭송하는 축문도 일반적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사 축문은 〈그림 5〉와 같다.

제상에는 1960년대에는 유물보따리가,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제수와 함께 『선생안』도 진설되었지만 지금은 올리지 않는다. 대신 제상 뒤에 역대 ‘반수신위’와 ‘접장신위’를 지방대신 펴서 붙인다. 제물은 『고령좌지사상무회절목』 「歲儀節目」에 의하면, 시재반수·시재접장·시재서기 및 공집사·어함반수·부반수·공사장·명사장·총무원·허의원·부접장·한산접장 등에

11) 김시황 편, 『한국예절문장』, 동양예학회, 2001 참고.

계 일정량을 할당하여 각출하고 있으며, 각 직위별 각출 물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직위	각출 물목	비고
1	시재반수	복어 1級, 청어 1束, 마른대구 1尾 乾柿 1貼, 홍합 3串, 백문어 1미 皮文魚 1미	연말(臘)
2	시재집장	복어 1級, 石魚 5尾, 백문어 2조條 복어 1급, 청어 1束, 마른대구어 1尾 복어 1급, 석어 3미	節氣 및 연말
3	시서기	복어 1속	절기
4	시공집사	복어 1속	절기
5	전함반수	복어 1급, 청어 1속, 마른대구 1미 복어 1급, 석어 3미	절기 및 연말
6	부반수	복어 1속, 청어 1속, 마른대구어 1미 복어 1속, 석어 2미	절기 및 연말
7	공사장	연말 : 복어 1미, 청어 5미, 마른 대구어 1미 절기 : 복어 1속, 석어 2미	
8	명사장		
9	식무원		
10	평의원		
11	부절장		
12	한산절장		

이상 표에서 열거한 것은 歲儀 조로 거두는 물목이며, 吉事·凶事 등이 생기면 이에 준하여 물목을 각출하였다. 총회와 대제가 끝나면 공문이 들어 있는 함은 신임 집장 집으로 옮겨진다. 다음으로, 좌사계에서는 대제 외에 매년 삼월 삼짓날, 사월초과일, 오월 단오, 칠월 백중, 구월 중앙절에 時祀를 1960년대까지 지내왔다. 그러나 요즘은 음력 9월 9일 한 차례만 모신다.

고령 우사계에 전하는 의례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제사는 원래 두 차례의 정기 대제(음력 3월 16일과 10월 25일)와 세 차례의 시제(정월 회일, 7월 15(백중), 8월 30일)를 모셨다. 그러나 현재 우사계의 제사는 봄·가을 두 차례 정기 대제만 행해진다. 이 대제들은 고인이 된 반수와 접장을 모시는 제사이며 매년 접장 집에서 거행된다. 우사계의 제사절차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아직까지 접장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우사계 제사는 반수와 접장의 신위를 함께 봉안하여 제사를 모시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2. 고령 상무사의 풍속

현재의 보부상에 대한 연구는 전통의 단절이라는 한계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지신밟기, 회추놀이 등 민간 풍속과 관련된 것들은 예전의 모습을 온전하게 재현하지 못한 채 명맥만 겨우 유지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도 지적한 것처럼¹²⁾ 보부상의 민속과 전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의례·민속놀이·민요 등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이 시대에 맞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¹³⁾

고령 상무사좌사계의 풍속 중에는 마당놀이의 일종인 ‘지신밟기’ 의례가 있었다. 마당놀이는 1980년 문화방송의 <토선생전>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전통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러나 상무사에서 거행한 ‘지신밟기’는 현대적 개념의 마당놀이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지신밟기는 축제의 주체와 관객이 일체가 되는 참여형이다. 즉, 음악과 더불어

12) 임경희, 이창식 「전계 논문」 참고.

13)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95~197쪽 및 이창식, 「보부상민요의 현장 논적 분석」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304쪽, 참고.

14) 은현정, 「고전 고설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3, 겨레어문학회, 2009, 152쪽 참고.

어 진행되는 연회와 주술적 행위는 의례보다는 축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행렬을 지어 돌아다니는 공연팀을 통해 참가자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위세 과시라는 부차적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¹⁵⁾

이 演戲에서 부보상이 부르는 노래 역시 다른 지방의 ‘지신밟기요’와 다른 점이 별로 없다. 비록 축제로써 지신밟기를 행하였지만 충남의 부보상 놀이처럼 다양하지도 않고 ‘사발통문’과 같은 대목이 삽입되지도 않는다. 다만 농촌의 걸립놀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회원의 집을 돌면서 대문, 마당, 대청, 부엌, 뒷간, 마굿간 순으로 지신을 밟으면서 운수대통하기를 기원해 준다. 가정의 평화와 장사의 성공을 빌면서 농악에 맞추어 ‘지신밟기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들은 祝文 형식이며 고정적인 체계 속에 대상에 따라 부분적인 어휘나 구절만 대체되어 불리고 있다.

고령 상무사의 지신밟기는 음력 정월 보름 아침에 좌사 회원들이 집장 집에 모여 의식을 준비하는 데서 시작한다. 집장 집의 대청에서부터 큰방-부엌-곳간-마구간 등을 두루 돌아가면서 ‘지신밟기 노래’에 맞춰 신명나게 놀이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찾아간 집마다 가정의 안녕을 빌어주면 주인은 현물을 내어놓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다. 걸립의 성격이 강한 동시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경문화의 배경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좌사는 등짐장수 중심으로 자리, 짚신, 옹기, 방망이 등과 같은 간이수공업품을 파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착성이 강해 풍속 또한 지속적인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부상’은 낙동강 유역을 무대로 소금, 어물 등의 해산물품과 이 지역의 특산물인 자기 등의 상품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지신밟기의 연행은 특정한 부보상 놀이의 형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농경문화의 세시의례를 수용하여 자신의 조직체를 강화했다는 의의가

15) 지신밟기 및 한국의 전통 가두 행렬의 의미에 대해선 전경옥, 「한국의 街頭行列과 전통연회」, 『공연문화연구』 18, 한국공연문화학회, 2009 참고.

있는 것이다. 지신밟기의 의식 자체가 그들의 기강을 존속시키고, 생활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보상 집단의 의식은 무엇보다도 단결을 과시한 독특한 조직체의 습속을 지녔다. 여느 집단보다 단결의 법통을 과시한 단체로서 부보상 집단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준 인물이나 집단을 통솔했던 ‘두령’들의 혼을 달래는 제의와, 그 제의에 따른 여흥을 통해 단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부보상 놀이는 이러한 부보상 집단의 풍속이 재현된 상업유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신밟기는 부보상의 관습과 그들의 사유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긴요한 독자적 집단민속놀이임을 알 수 있다.¹⁶⁾

한편, 지신밟기 행사는 주로 부보상 좌사 회원의 집을 돌면서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지만 때로는 회원이 아닌 마을 사람들도 희망하면 찾아가서 그 가정의 無故安宅을 빌어준다. 이 축제에서 불려지는 ‘지신밟기 노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주인 주인 나오소 左社 손님 들어가오
 사해 안에 사는 사람 서로서로 형제인데
 고을 백민끼리 남남 보듯 할 수 있소
 산토끼가 죽어가면 여우도 슬퍼하오
 금수조차 그리한데 한심하다 우리 세상
 무거운 등짐 지고 이곳 저곳 떠돌면서
 아침에는 동녘 하늘 저녁에는 서녘 땅
 어찌다 병이 나면 구원할 이 전혀 없네
 사람에게 짓밟히고 텃세한테 팔세 받고
 언제나 숨겨두면 까마귀의 밥이 되고
 슬프도다. 우리 인생 이럴 수가 어찌 있고
 우리가 산다한들 몇 만 년을 살 것이오

16)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95~197쪽.

한 대 묶어 단결하고 기올로서 다스리면
 형도 좋고 아우 좋고 서로서로 도올제면
 동네방네 좋을시고 우리 고을 좋을시고

이 사설은 고령 좌사에서 불러진 ‘지신밟기 노래’로서 지신밟기의 의식절차에서 첫머리에서 구연된다. 부르는 주체인 좌사를 앞세우면서 주로 대문 앞에서 뜰 안으로 들어가며 부르는 대목이다. 좌사의 의식임을 제시하고,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를 무상감에다 호소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산토끼가 죽어가면~’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는 순망치한 唇亡齒寒의 고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일체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체감을 중시하는 태도는 사설 마지막까지 형과 아우가 서로 돕자는 식으로 마무리될 정도로 보부상 집단에서 제일 강조하던 덕목임을 『상무사장정』이나 『부칙』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식 그 자체가 기원예측 의례이기 때문에 사설 또한 신을 향한 부모상 집단의 기원을 담고 있다. 사설 끝에는 ‘어라 대신 지신아’함으로써 신명과 흥취를 돌우고 그때마다 농악의 힘찬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대문으로 들어가면서 부르고 이어서 뜰 위, 부엌 앞, 집 뒷뜰 돌기, 마구간으로 돌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들을 부른다.

어오 대신 지신아 지신지신 놀리세
 이 마당이 뉘 마당고 대감택 마당이다
 어느 대본이 지었고 김대본이 지었고 이대본이 지었소
 김대본 이대본이 가진 연장 갖추고 미숭산에 들어가서
 가야산에 들어가서 나무나무 베어다가
 굽은 나무 등을 치고 곧은 나무 가지쳐서
 용의 머리 터를 잡고 학의 머리 손질하여 초가삼간 짐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 어와 대신 지신아

대청도 네 구석 큰방도 네 구석 곳간도 네 구석
 사사 십육 열여섯 이 집 짓고 16년에
 아들 아기 자라서 진사 급제하거라
 딸 애기는 시집가서 효부열녀 되어라
 오복만복 이 집으로 어라 대신 지신아

조왕조왕 조왕신 목이 말라 들리왔소 배가 고파 들어왔고
 물 한 모금 주시오 밥 한 술 주시오
 동해부왕 조왕신 서해부왕 조왕신 낙동강의 조왕신
 대가천의 조왕신 용담천의 조왕신 철령철령 넘친다
 어라 대신 지신아

좌청룡 우복코 우백호는 좌복코 청룡 황룡이 누릴세
 잡귀잡신 강도 절도 막아라 사기도 막아라 주색잡질도 막아라
 이와 대신 지신아

씩소황소는 어디가고 꼬끄당 암소 누워있네 금송아지가 누웠네
 눈도 같고 발도 같고 걸음일랑 실어내고 오곡잡곡 실어들여
 쌀 곡식도 일천 석 잡 곡식도 일천 석 양대 천 석 부르세
 어라 대신 지신아

이러한 사설의 전개로 보아 ‘지신밟기 노래’도 세시의례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연행부합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설 역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집단의 단합과 함께 지신을 통한 무사를 기원한다. 본래 세시의식요 각편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신밟기노래’ 이외에도 고령을 포함한 인근지역은 상업이 발달하여 〈징금이타령〉, 〈장타령〉, 〈돈타령〉, 〈금강산 조리장사〉, 〈독장사〉 등의 상업성의 근대 타령류의 유희가 있었다. 고령의 유희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노래가 〈등금쟁이타령〉이다. 부모상들이 주로 불렀는데, 지명을 이용하여 노랫말

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사실 위음 방식이 독특하고, 그 비유가 지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이 〈등금쟁이타령〉에는 대구에서 남원까지 99개 마을이 등장한다. 고령의 부보상들이 이 구간의 마을을 왕래하면서 부른 노래이다.¹⁷⁾

현재 민속학에서는 민요나 노동요의 친환경적·친자연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민요나 노동요가 순환적인 엔트로피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음악치료·지역문화산업에 활용·교육적 활용 등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굳이 지방자치제나 친환경 등 작금의 이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령지역 보부상들이 부르던 노래는 현장성·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조선의 보부상은 후기로 들어와 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당초 보상과 부상으로 분리·조직되었던 보부상은 1883년에 惠商公局이 설립되면서 하나의 단체로 다시 통합되었다.¹⁹⁾ 해상공국은 商局·商社·商會 등을 외국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 상업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점과 보상과 보상을 私商과 외국상인들의 침투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설립된 것이다. 해상공국에는 本局에 堂上官과 監務官을 두고 전국의 부보상을 총괄하게 하였으며, 지방에는 각 도에 도반수·도접장을 두고 각 읍에는 반수와 접장을 두었다. 도반수는 관리출신들이 임명되었고 도접장은 부보상 출신의 능력자가 임명되었다. 각 읍 반수와 접장은 해당 지역에서 公薦·擇

17) 권오경, 「경북 고령군 민요의 진승양상과 갈래별 특징」, 『고려문화사대계』(③문학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2009, 465~470쪽.

18) 이윤선, 「연령층별 민요 부르기의 일생 의례적 성격-민요의 교육과 활용을 위한 생태민요학 시론-」,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 참고.

19) 임경희, 『조선부보상과 고령 상무사』, 고령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69쪽.

定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임원은 접장이 택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보상으로 假裝한 무뢰배들이 부보상들에 부여되었던 상품전매권을 남용함으로써 민폐를 끼치게 되어 해상공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5년에 해상공국을 내무부에 속하게 하는 동시에 그 명칭을 商理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상리국에서는 부상을 左社, 보상을 右社로 칭하여 관할하였으며, 본국의 임원과 각 읍의 임원은 해상공국시기와 동일하였으나, 도 조직에는 도반수와 도접장 위에 統帥의 직위를 신설한 것이 차이점이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해 조직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므로 부보상과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유지되었다.

고령 상무사 역시 국가에서 파견한 관직인 縣監·郡守 등과 유대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였으며, 지역 출신 胥吏들이 班首를 역임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상무회의 반수들은 현감이나 군수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송덕비·공덕비를 세워 그들의 업적을 기렸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상무회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학술적 입장에서 볼 때, 조선조의 선정비 건립은 정치·경제를 막론하고 역사·민속·지역학의 입장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선정비·영세불망비·공덕비 등의 난립, 탐관오리들의 수탈 등 선정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짐작한 나머지 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소홀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어 선정비의 분포 정도, 건립 주체, 시기별 차이 등에 대해선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⁰⁾

20)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 후기 선정비 수의 증가를 중앙 정부와 지방민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 한 임용한(「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호, 고려사학회, 2007)의 연구는 참신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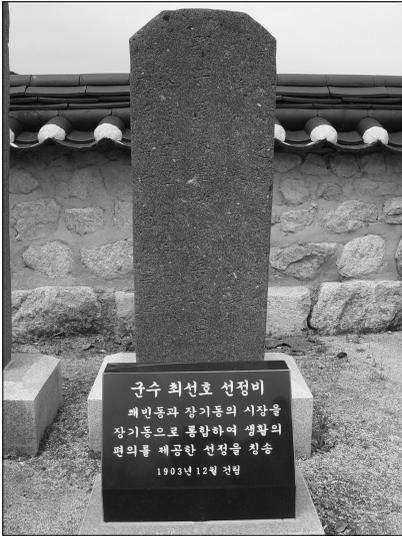
〈그림 7〉 觀察使李允用不忘碑



〈그림 6〉 1879년 좌사계에서 건립한 선정비

상무사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관할 주민들의 발의로 건립된 공덕비는 현재 고령 상무사기념관 경내와 함천군 야로면 등에 현존하고 있다. 먼저 1879년 6월에 좌사계반수였던〔色吏〕유의순의 주도하에 건립한 〈縣監洪候恩燮清德善政碑〉, 경상우도의 暗行御史 직을 수행했던 이현영(李鎭永, 1837~ 1907)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883년 5월에 건립한 〈緇衣道李公諱鎭永永世不忘碑〉, 쾌빈동과 장기동의 시장을 통합하여 시장을 장기동으로 옮긴 후에 군민들 뿐만 아니라 상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한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1903년 12월에 건립한 〈郡守崔候璇鎬善政碑〉,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이운용(李允用, 1854~1939)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觀察使李公諱允用不忘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1903년(계묘) 12월 장기동 商民들에 의해 건립된 〈관찰사이공휘윤용불망비〉는 이 비의 뒷면에 당시 상단의 반수와 접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중 반수 ‘李鎭讚’이란 이름이 우사계에 전하는 『반수지방』에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상무사우사계의 설립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또 〈현감송순혁영세불망비〉와 〈군수장근덕영세불망비〉 등을 통해서도 당시 반수를 역임한 金燾國·李鳳周 등이 지역 출신 서리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9〉 郡守崔羨鎬善政碑



〈그림 8〉 繡衣道李公諱金燾永世不忘碑

하지만 경상도관찰사 이윤용의 불망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²¹⁾ 당시에 건립된 불망비의 주체는 대부분 해방 이후 친일인사로 단죄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다. 이와 함께 상무사의 조직도 전과 같지 않았으며, 현재는 친목계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상무사나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선정비는 국가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이는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21) 이윤용(李允用, 1854~?)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의 형으로, 한일병합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작위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럼, 중앙 정부와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지방민의 입장에서 선정비를 세운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IV. 結論

이상에서 고령 상무사와 관련있는 『商務社章程』·『班首先生案』·『班首接長名單』 등 18종의 성책 형식 고문서를 통하여 고령 상무사의 형성과 의례, 민속 등을 살펴보았다. 고령 상무사는 다른 지역 상무사에 비해 관련 자료는 다소 남아 있는 편이지만, 구성원들의 신분적 제약과 정치 참여, 신문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몰락 등의 원인으로 연구 수행에 있어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고령 상무사 관련 자료를 수록된 형식별로 분류해 보면, 『商務社章程』 류의 규정집, 『先生案』 류의 인원 명단, 『高靈郡左社節目』 류의節目, 『祭祝文式』의 생활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인원 정보는 『반수집장명단』과 『계원명부』에 상세하며, 전자보다 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반수집장명단』은 서명처럼 반수와 집장을 구분하였는데, 반수는 朴根得부터 白璇鉉까지 90명, 집장은 徐文賢부터 田正萬까지 69명의 姓名一字-거주지를 기록하였다. 『계원명부』는 姜基洛에서 朴基星에 이르기까지 우사계원 559명의 성명一字-본관-주소를 기록하여, 현전하는 인명부 가운데 수록내용이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절목에서 보면, 우사계는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잃었지만, 전통정신과 유풍을 계승하여 친목을 돈독히 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관이 작성된 때가 임자년(1912년)이므로 1910년이 지나 상무사는 상업적 기능을 완전히 소실하고, 친목계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상무사의 구성원 및 조직의 의례는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무사의 반수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祭禮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상무사의 제례는 일반적인 그것과는 상이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상무사의 제례는 제사가 끝난 뒤 時在接長으로 차장된 사람에게 公文과 기물을 올리는 의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규 모의 宴會가 뒤따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령 우사계에 전하는 의례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제사는 원래 두 차례의 정기 대제(음력 3월 16일과 10월 25일)와 세 차례의 시제(정월 회일, 7월 15(백중), 8월 30일)를 모셨다. 그러나 현재 우사계의 제사는 봄·가을 두 차례 정기 대제만 행해진다. 이 대제들은 고인이 된 반수와 접장을 모시는 제사이며 매년 접장 집에서 거행된다. 우사계의 제사절차는 좌사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아직까지 접장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우사계 제사는 반수와 접장의 신위를 함께 봉안하여 제사를 모시는 점이 특이하다.

고령 상무사 역시 국가에서 파견한 관직인 縣監·郡守 등과 유대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였으며, 지역 출신 胥吏들이 班首를 역임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상무회의 반수들은 현감이나 군수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송덕비·공덕비를 세워 그들의 업적을 기렸다. 고령 상무사나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선정비는 국가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이는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중앙 정부와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지방민의 입장에서 선정비를 세운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령에는 상무사기념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관련 유품이나 문헌 자료가 많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련 의례를 소략하게나마 정기적으로 설행하고 있다. 전통시대 문화원형의 보존과 복원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商務社章程』, 大加耶博物館 所藏.
『班首先生案』, 大加耶博物館 所藏.
『班首接長名單』, 大加耶博物館 所藏.
『先生案』, 大加耶博物館 所藏.
『接長先生案』, 大加耶博物館 所藏.
『故先生神位案』, 大加耶博物館 所藏.
『稷案』, 大加耶博物館 所藏.
『界圓名簿』, 大加耶博物館 所藏.
『左社契規約』, 大加耶博物館 所藏.
『高靈郡左社節目』, 大加耶博物館 所藏.
『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目』, 大加耶博物館 所藏.
『左支契規約及稷圓名簿』, 大加耶博物館 所藏.
『祭祝文式』, 大加耶博物館 所藏.
『高靈郡友社商稷』, 大加耶博物館 所藏.
『高靈郡友社商稷定款』, 大加耶博物館 所藏.
『高靈郡友社商稷財産目錄』, 大加耶博物館 所藏.
『商務章程附則』, 大加耶博物館 所藏.
『東亞改進教育會商業課章, 大加耶博物館 所藏程』.

2. 단행본 및 논문

- 권오경, 「경북 고려군 민요의 전승양상과 갈래별 특징」, 『고려문화사대계』(③문화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2009.
김대길, 「조선후기 시장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3.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冠婚喪祭」, 『한문학논집』 30, 근
역한문학회, 2010.
엄묘섭, 「조선후기보부상집단의 사회적 기능」,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87.

- 유교성, 「이조말기 보부상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1958.
- 柳子厚, 『朝鮮負襍商攷』, 정음사, 1948.
- 은현정, 「고전 고설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3, 겨레어문학회, 2009.
- 李能和, 『朝鮮の負襍商とその變遷』, 『朝鮮』 271호, 1937.
- 이운선, 「연령층별 민요 부르기의 일생 의례적 성격—민요의 교육과 활용을 위한 생태 민요학 시론—」,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
- 이창식, 「보부상 민요의 현장론적 접근」,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 이창식, 「보부상민요의 현장론적 분석」,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 임경희, 『130년을 이어 온 우리 상인단체 고령 상무사』, 고령군(중문출판사), 2002.
- 임경희, 『조선부보상과 고령 상무사』, 고령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 임용한,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호, 고려사학회, 2007.
- 전경욱, 「한국의 街頭行列과 전통연희」, 『공연문화연구』 18, 한국공연문화학회, 2009.
- 조영준,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대한 재평가—元洪州六郡商務友社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7호, 한국경제사학회, 2009.
- 조재곤 「보부상 문서의 운영 체계와 활용 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23집(겨울호), 2002.
-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2001.
- 車相嘖, 『朝鮮의 襍負商』, 『朝光』 4-9, 1938.
- 최진옥, 「韓末 襍負商의 變遷」, 『정신문화연구』 통권 2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Abstract

The Origin and Related Rite of Goryeong Sangmusa's Through Ancient Documents

Oh, Yong-Won

Through ancient documents I am going to investigate Goryeong Sangmusa's origin, ceremonies, and folk customs. There are now eighteen ancient documents in existence. By classifying those documents, I can evaluate the origin, managements, Gyeol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eremony. The members and the organizations of ceremonies seem to be deep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mong those, the ritual worshipping Bansu ancestral tablet of Sangmus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mony. However, it has a few differences with usual ceremonies. For example, there was specially prepared event, in which Sajaechepjang is given Gongmoon and Gimul, followed by a large scaled banquet. Ceremonies of Goryeong Woosagye were similar with Jwasagye. There were two periodical Daeje, and three Sije, originally. However, now there are two periodical ceremonies of Woosagye in spring and autumn. Worshipping the ancient Bansu and Jeopjang, those Daeje are performed in Jeopjang's house annually. The procedures of Woosagye's ritual are similar with those of Jwasagye's, except that the ritual has been performed in Jeopjang's house. It is notable, however, that ancestral tablets of Bansu and Jeopjang are enshrined together in Woosagye's ceremony.

Key Word

Goryeong[高靈], Sangmusa[商務社], Jwasagye[좌사계], Woosagye[우사계], Bansu [班首], Jeopjang[接長], Ancient documents[古文書], Seonjeongbi[선정비], Rite[儀禮]

· 논문투고일 : 2010.6.22. 심사시작일 : 2010.7.1. 심사완료일 : 2010.7.10.